

강원관광대학 경영혁신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 본 연구소는 강원관광대학 부설 경영혁신연구소(이하 연구소 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 연구소는 산학 일체를 연구하고 산업경제 및 기업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소재지) 연구소는 강원관광대학 내에 둔다.

제 4 조 (사업) 연구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산업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
2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 수행
3. 산업체의 실태 조사에 따른 경영진단 및 연구 용역
4. 기업경영 및 소상공경영에 관한 자문컨설팅과 교육훈련 지도
5. 연구자료의 간행, 연구발표회,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
6. 국내외 학술 및 기술 연구기관과의 정보교환
7. 국내외 저명 학자의 초청 및 해외연구를 통한 벤치마킹
8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대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 5 조 (소장) ① 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둔다.

② 소장은 전임교수인 연구위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,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제 6 조 (간사) ① 연구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학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한다

③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, 연구소의 업무를 집행한다.

- 제 7 조 (연구위원) ① 연구위원은 연구소의 연구활동과 부합하는 전공을 가진 본 대학 전임교원과 외부의 연구인력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학장이 위촉할 수 있다.
- ② 연구위원은 임기를 두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해촉할 수 있으며, 본 대학 연구위원이 본 대학에서 퇴직한 때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.
- ③ 연구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는 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, 소장의 허락을 얻어 연구소 연구위원의 자격으로 외부과제의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다.

- 제 8 조 (조교) ① 연구소에 조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.
- ② 조교는 소장이 제청하여 학장이 임명한다.

- 제 9 조 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1. 사업계획
 2.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
 3. 연구비 배정
 4. 기타 주요 사항
-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간사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3 장 연구과제 및 배정

- 제 10 조 (종류)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1. 내부과제: 연구비가 학장에 의해 지급되거나 또는 학장을 경유하여 지급되며, 연구 수행자를 학장이 결정하여야 할 과제
 2. 외부과제: 연구비가 외부 기관에서 지급되며 연구 수행자를 연구비 지급 기관에서 지정한 과제로서 연구비가 학장을 경유하여 지급되어야 할 과제

- 제 11조 (배정원칙) ① 외부과제는 연구비 지급 기관이 지정한 연구위원이 수행한다.
- ② 내부과제는 연구과제의 성질상 또는 연구비 지급 기관이 설정한 기준에 의하여 연구 수행자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이러한 원칙이 없거나 이에 의하여 지정할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한다.
1. 과거 내부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연구위원에게 우선 배정하며, 이에 해당되는 위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본 대학의 부임 순으로 배정한다.
 2. 제1호에 따라 배정하고 남은 과제는 연구위원 각자가 최근에 수행한 연구과제의 수행연도를 비교하여 배정일 현재 가장 오래된 연구위원에게 배정한다.

제 12 조 (배정절차) 연구과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이를 배정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 13 조 (경비)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.

1. 대학 연구보조금
2. 사업 수입금
3. 기부금 또는 찬조금
4. 기 타

제 14 조 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 회계연도에 준하여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15 조 (사업보고) 연구소의 소장은 매 학년말에 학장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